
복지국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시설 이전비

사업기간	2025. 8.	사업위치	보훈단체 10개 단체
사업규모	보훈단체 10개		
사업목적	9월 개관 예정인 보훈회관의 10개 보훈단체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임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0,000	0	40,000	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		40,000	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보훈회관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보훈단체 이전비용 : 4,000,000원 * 10개 단체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흠어져있는 10개 보훈단체의 보훈회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용
 -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 보훈단체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보훈회관 건립 공사 준공
- 2025. 4. : 인테리어 공사 착공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 2025. 8. : 인테리어 공사 준공 및 보훈단체 이전
- 2025. 9. : 보훈회관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보훈회관 시설관리 용역비

사업기간	2025. 8.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동 978번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보훈회관의 원활한 청사관리 및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용역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임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27,500	0	127,500	127,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7,500		127,500	127,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500	
보훈회관 운영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보훈회관 인건비 =		
		- 인건비 : 2,700,000원 * 3명 * 5개월 =	40,500	
		- 수 당 : 1,120,000원 * 3명 * 5개월 =	16,800	
		- 보험료 및 퇴직금 : 700,000원 * 3명 * 5개월 =	10,500	
		. 보훈회관 운영비		
		- 일반운영비 : 4천원(면적당 운영비용) * 1,833㎡ * 5개월 =	39,118	
		- 용 역 비 : 1,600천원 * 환경미화 2명 * 5개월 =	16,000	
- 수선유지비 : 500원(면적당 운영비용) * 1,833㎡ * 5개월 =	4,582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보훈회관’의 시설관리 필요
-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승계할 수 있는 공간 시설 관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보훈회관 건립 공사 준공
- 2025. 4. : 인테리어 공사 착공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 2025. 8. :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25. 9. : 보훈회관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복지업무 이동통신비		
사업목적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 위원회를 둔다
	해당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561	5,084	0	5,084	1,52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61	5,084		5,084	1,52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84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 서면심의수당 50,000원*6명*10회 = 3,000 - 대면심의수당 100,000원*6명*2회 = 1,200 .기초생활보장 홍보물 제작 : 250,000원*2회 = 500		
	201-02 공공운영비	.통합조사관리 이동통신비 : 16,000원*2대*12월 = 384		

□ 예산요구 사유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용 이동통신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참석수당 인상 및 생활보장과 신설에 따른 기존 예산 재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매월 : 이동통신비 요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2,950천원 ○ 기초생활 홍보물 제작 : 500천원 ○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 661천원
2024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2,100천원 ○ 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위한 책자 : 800천원 ○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 661천원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11	4,111	-	-	
2024	3,561	3,561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통합조사관리1팀 이인옥	담당자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2612 2640
-----	-------	----------------------------	-----	--------------------------	----	--------------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3.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674가구			
사업목적	겨울철 한파대비 안전취약계층의 피해발생 예방 및 민생안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당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①항	
한파·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과 안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등의 난방비용 및 소모성 물품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83,700	0	483,700	483,700	
국비		0			0	
도비		483,700		483,700	483,7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3,700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674가구*50천원*1회	= 483,7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24.12.17.) 시군 건의(난방비 지원) 반영
- 겨울철 한파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재해구호기금, 도비100% 신규 추진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대상자 파악 및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 1. : 안전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의료기관
사업규모	8,247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482,887	3,373,878	3,391,704	-17,826	-109,00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82,887	3,373,878	3,391,704	-17,826	-109,00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2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경정(3,373,878,000원) - 기정(3,391,704,000원)	= -17,826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 예탁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년 12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5년 1월, 4월, 7월, 10월, 11월 진료비 예약금 지급(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4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51,388	2,951,388	-	-	
2024	3,482,887	3,482,887	-	-	
2025	3,391,704	-	-	3,391,70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범석	전화	2622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응급안전관리요원 2명, 장비 636대		
사업목적	독거노인 가정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28,108	141,986	143,770	-1,784	13,878	
국비	64,054	70,993	71,885	-892	6,939	
도비		0			0	
시비	64,054	70,993	71,885	-892	6,93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4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 급여 : 경정(2,518,355원*2명*12월)-기정(2,578,300원*2명*12월)	=	-1,439
		· 사업비 - 장비운영비 : 경정(78,000,000원)-기정(78,350,000원)	=	-345

□ 예산요구 사유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처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4년도형 장비 대여료 지원 기간 축소(9→6개월) 및 인건비 축소(2,560천원→2,554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24명
2024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31명
2025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3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8,128	128,128	-	-	
2024	127,632	126,300	-	1,332	
2025	143,770	-	-	143,77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2205
-----	--------	------------	-----	----------	----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경로당 3개소 및 노인복지관 1개소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①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951	75,480	0	75,480	69,529	
국비		0			0	
도비	1,785	19,644		19,644	17,859	
시비	4,166	55,836		55,836	51,6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480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경로당 환경개선 3개소 : 25,480,000원 ·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1개소 : 50,000,000원	= 25,480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2024.11.1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1.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상 시설 선정
- 2025.01. ~ 12. : 공사진행
- 2025.12 :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회복지시설 2개소 시설보수
2024	- 사회복지시설 1개소 시설보수
2025	- 사회복지시설 4개소 시설 보수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000	66,000	-	-	
2024	5,951	5,951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행정7급 차은영	전화	2207
-----	--------	------------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178명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2,595,013	14,062,301	14,062,301	0	1,467,288	
국비	6,297,506	7,031,150	7,031,150		733,644	
도비	944,626	1,054,674	1,054,674		110,048	
시비	5,352,881	5,976,477	5,976,477		623,59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부대경비(상해보험료 등) : 161,500원*350명 · 경정(57,750,000원)-기정(56,525,000원)	=	-1,225
		·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 100,000원* 1명*12월	=	1,2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노인일자리 회의 및 간담회 등 · 경정(1,488,000원)-기정(1,463,000원)	=	25

□ 예산요구 사유

- '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지급개선안'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통계목' 신설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통계목' 신설하여 증감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2025.10.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지도점검
- 2025.11. ~ 12.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3개 사업에 8,185,382천원 지원, 2,679명 참여(101%)
2024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7개 사업에 7,961,251천원 지원, 2,980명 참여(101%)
2025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7개 사업에 7,961,251천원 지원, 3,178명 참여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434,205	8,185,382	-	237,904	
2024	12,594,698	11,906,540	-	688,158	
2025	14,062,301	-	-	14,062,30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24명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의 인건비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50,760	692,070	691,610	460	41,310	
국비	325,380	346,035	345,805	230	20,655	
도비	48,807	51,905	51,870	35	3,098	
시비	276,573	294,130	293,935	195	17,55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0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경정(30,090,000원*23명)-기정(30,070,000원*23명) - [(2,097,000원*13월*1명+고용부담금 2,829,000원)*23명 - (2,096,000원*13월*1명+고용부담금 2,822,000원)*23명]	= 46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지원단가 증액(기본급 2,096천원 → 2,097천원, 고용부담금 2,822천원 → 2,829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지급
- 2025.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 460,440천원 지급
202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599,206천원 지급
2025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692,070천원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1,592	460,440	-	1,152	
2024	650,760	599,206	-	51,554	
2025	691,610	-	-	691,61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효드림밥상 사업

사업기간	2025. 3.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100(사우동) 통진읍 마송1로 150
사업규모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500명		
사업목적	어르신에게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중식 제공을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593,740	0	593,740	593,7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93,740		593,740	593,7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3,740	
효드림밥상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급식비 : 5,000원*250명*2개소*5일*36주 · 운영비 : 24,500,000원*2개소 · 인건비 : 2,094,570원*2명*8개월	= 450,000 = 49,000 = 33,513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물품구입비 : 29,113,500원*2개소 · 소규모수선공사 : 3,000,000원*1개소	= 58,227 = 3,000	

□ 예산요구 사유

- 효드림밥상 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 장소 2개소의 인건비, 급식비, 시설비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제반시설 확충
- 2025.05.~ : 효드림밥상 사업 실시
- 2025.10. :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 2025.12.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단계별 급식소 확대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2205
-----	--------	------------	-----	----------	----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2명(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40명)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6조	
	법령 위임규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도지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5,860	33,960	33,480	480	8,100	
국비	10,344	13,584	13,392	192	3,240	
도비	2,327	3,057	3,013	44	730	
시비	13,189	17,319	17,075	244	4,1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기본운영비 : 2명(동료상담가)*20,000원*12월	= 480	

□ 예산요구 사유

-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 예산증감 사유

- 기본운영비 단가 증가 (기존: 920,000원 -> 변경: 94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위탁 체결(김포시자립생활지원센터)
- 2025.01.~2025.12. : 사업수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11명
2025	- 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1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860	20,780	-	5,080	
2025	33,480	-	-	33,48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12
-----	--------	-------------	-----	----------	----	------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언어 및 청능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00	3,000	0	3,000	0	
국비		0			0	
도비	900	900		900	0	
시비	2,100	2,100		2,1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3,000,000원*1명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재활치료에 필요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지속적인 언어·청능 기능의 향상 및 회복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 지연 통보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에 의한 추경 요구 및 기존 지원대상자 1명 계속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2명
2024	- 대상자 : 1명
2025	- 대상자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	5,399	-	601	
2024	3,000	2,462		538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9급 최보람	전화	5656
-----	--------	-------------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9명		
사업목적	출산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삶의 질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400	10,800	8,400	2,400	2,400	
국비	5,880	7,560	5,880	1,680	1,680	
도비	378	486	378	108	108	
시비	2,142	2,754	2,142	612	61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경정(1,200,000원*9명)-기정(1,200,000원*7명)	= 2,400	

□ 예산요구 사유

-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여성 장애인의 경쟁적, 심리적 부담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지원 대상자 증가 (7명-> 9명)에 따른 부족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8명
2024	- 대상자 : 7명
2025	- 대상자 : 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00	8,000	-	-	
2024	8,400	7,800	-	600	
2025	8,400	-	-	8,4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9급 최보람	전화	5656
-----	--------	-------------	-----	----------	----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30가구		
사업목적	저소득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에 대한 획득 기회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제5조제1항제7호
	위임규정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도시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9,170	16,620	17,820	-1,200	-2,550	
국비		0			0	
도비	3,834	4,986	5,346	-360	1,152	
시비	15,336	11,634	12,474	-840	-3,70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4,300원*322명*12월)-기정(4,500원*330명*12월) =	-1,2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신문 구독료를 지원하여 정보접근성 확대 및 복지 서비스 누락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인 복지신문 지원 단가 감소(기존:4,500원 → 변경:4,3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4개 신문사 주간지, 연 355가구 구독
2024	- 5개 신문사 주간지, 연 323가구 구독
2025	- 5개 신문사 주간지, 연 297가구 구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170	13,572	-	5,598	
2024	19,170	17,110	-	2,060	
2025	19,170	-	-	19,17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김효정	전화	2211
-----	--------	-------------	-----	----------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26명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연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연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409,229	7,321,043	7,182,391	138,652	-88,186	
국비	5,179,460	5,124,730	5,027,674	97,056	-54,730	
도비	453,954	439,263	430,943	8,320	-14,691	
시비	1,775,815	1,757,050	1,723,774	33,276	-18,7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8,652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경정(7,321,043,000원)-기정(7,182,391,000원)	= 138,652	

□ 예산요구 사유

- 연금 지급을 통한 관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기초급여 증가(334,810원 -> 342,510원)에 따른 부족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23,830명/ 월 평균 : 1,985명 / 월 평균 지급액 : 573,874천원
2024	- 누적인원 : 19,624명/ 월 평균 : 1,962명 / 월 평균 지급액 : 609,958천원
2025	- 누적인원 : 23,112명/ 월 평균 : 1,962명 / 월 평균 지급액 : 610,08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00,751	6,886,488	-	14,263	
2024	7,409,229	7,337,988	-	71,241	
2025	7,321,043	-	-	7,321,043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9급 최보람	전화	5656
-----	--------	-------------	-----	----------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82명		
사업목적	성장기 발달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아동의 지속적 치료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643,657	1,876,800	1,643,658	233,142	233,143	
국비	1,150,560	1,313,760	1,150,560	163,200	163,200	
도비	74,600	84,456	73,965	10,491	9,856	
시비	418,497	478,584	419,133	59,451	60,08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3,14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 경정(200,000원*782명*12월) - 기정(200,000원*685명*12월) =	233,142	

□ 예산요구 사유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성의 일부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장애아동 가족지원법 상 “장애아동”의 정의 중 미등록 장애 대상자의 연령이 6세에서 9세로 늘어나 (685명-> 782명) 지원대상자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2025.01.~2025.06. : 상반기 소득 재조사
- 2025.06.~2025.10. :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하반기 소득 재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711명
2024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874명
2025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89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72,000	1,372,000	-	-	
2024	1,643,657	1,643,657	-	-	
2025	1,643,658	-	-	1,643,658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공무직)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분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070	30,090	30,070	20	20	
국비	15,035	15,045	15,035	10	10	
도비	2,255	2,257	2,255	2	2	
시비	12,780	12,788	12,780	8	8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경정(27,261,000원)-기정(27,248,000원) - (2,097,000원*13월)-(2,096,000원*13월)	=	13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경정(2,829,000원)-기정(2,822,000원)	=	7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상승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지원단가 증액 (2,096천원→ 2,097천원) 및 고용부담금 증액 (2,822천원→ 2,829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매달 22일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 20,887천원 지급
2024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 29,568천원 지급
2025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 30,090천원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840	28,840	-	-	
2024	29,580	27,111	-	2,469	
2025	30,070	-	-	30,07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국비 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적응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30,279	243,696	242,079	1,617	13,417	
국비	161,196	170,587	169,455	1,132	9,391	
도비	34,542	36,554	36,312	242	2,012	
시비	34,541	36,555	36,312	243	2,01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국비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및 운영비 경정(243,696,000원) - 기정(242,079,000원)	= 1,617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호

□ 예산증감 사유

- 휴일근무수당 단가 상승 반영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경기도 여성정책과-77(2025.01.0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분기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6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입소인원 : 21명(피해자 18명, 동반아동 3명) / 퇴소인원 : 18명(피해자 15명, 동반아동 3명) / 평균보호인원 : 9명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6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입소인원 : 21명(피해자 15명, 동반아동 6명) / 퇴소인원 : 15명(피해자 13명, 동반아동 2명) / 평균보호인원 : 9.7명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1,264	221,264	-	-	
2024	230,279	230,279	-	-	
2025	242,079	-	-	242,079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동반아동 및 부식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동반아동 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069	8,570	7,069	1,501	1,501	
국비		0			0	
도비	2,121	2,571	2,121	450	450	
시비	4,948	5,999	4,948	1,051	1,0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동반아동 및 부식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동반아동 지원비 및 부식비 경정(8,570,000원) - 기정(7,069,000원)	= 1,501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동반아동비 지원으로 편익 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지원단가 : 동반아동비 1개월당 400천원 / 부식비 1일당 1천원

□ 예산증감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년간 평균 입소 현황 반영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경기도 여성정책과-17981(2024.12.3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 입소자 성인 21명, 동반아동 4명
2024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 입소자 성인 24명, 동반아동 6명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00	6,300	-	-	
2024	7,069	7,069	-	-	
2025	7,069	-	-	7,069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족센터 운영 지원(국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가족센터(대곶, 구래)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상담·교육, 생활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인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83,150	459,860	448,250	11,610	-423,290	
국비	441,575	229,930	224,125	5,805	-211,645	
도비		0			0	
시비	441,575	229,930	224,125	5,805	-211,64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610	
가족센터 운영 지원(국비)	307-05 민간위탁금	· 온가족보듬(취약위기가족) : 경정(244,860,000원)-기정(233,250,000원) =	11,610	

□ 예산요구 사유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

□ 예산증감 사유

- 보듬매니저 활동 횟수 증가 및 상담, 캠프나들이, 식구데이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경기도 확정내시 예산액 변경 사항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7438(2024. 12. 2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김포시 가족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회기수 : 3,725회(평균 만족도 4.82점) ○ 연간 누적인원 : 36,241명(남 7,470명, 여 28,771명)
2024	○ 총 회기수 : 8,826회(평균 만족도 4.86점) ○ 연간 누적인원 : 34,519명(남 9,163명, 여 25,356명)
2025	○ 2025년 사업계획 수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1,827	461,827	-	-	
2024	810,050	708,974	-	101,076	
2025	448,250	-	-	448,25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5605
-----	-------	------------	-----	----------	----	------

아이돌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가족센터(대곶)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맞벌이,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981,911	4,288,997	4,616,022	-327,025	307,086	
국비	2,787,337	2,986,139	3,231,216	-245,077	198,802	
도비	597,287	651,429	692,403	-40,974	54,142	
시비	597,287	651,429	692,403	-40,974	54,1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7,025	
아이돌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1,575,370,000원)-기정(1,592,762,000원)	=	-17,392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예탁비 : 경정(2,713,627,000원)-기정(3,023,260,000원)	=	-309,633

□ 예산요구 사유

-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예탁비 감액 [경기도 가족정책과-7245(2024. 12. 1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서비스제공에 따른 예산 집행
- 2025.01.~2025.12. :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금 사업비 예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 제공 가구수 총 4,785가구(시간제 4,356가구, 종일제 100가구, 질병감염아동 329가구) ○ 누적 제공 아동수 총 7,398명(시간제 6,873명, 종일제 139명, 질병감염아동 386명)
2024	○ 누적 제공 가구수 총 3,368가구(시간제 3,081가구, 종일제 65가구, 질병감염아동 222가구) ○ 누적 제공 아동수 총 5,224명(시간제 4,916명, 종일제 83명, 질병감염아동 225명)
2025	○ 2025년 사업계획 수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94,808	2,936,461	-	358,347	
2024	3,981,911	3,041,734	-	940,177	
2025	4,616,022	-	-	4,616,02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5605
-----	-------	------------	-----	----------	----	------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가족센터(구래)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1인가구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제9조제1항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	8,000	2,000	10,000	
국비		0			0	
도비		3,000	2,400	600	3,000	
시비		7,000	5,600	1,400	7,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경정(10,000,000원)-기정(8,000,000원)	= 2,000	

예산요구 사유

- 청년, 중장년, 노인의 세대간 소통 및 일상 공유 등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 사회적 연대감 도모

예산증감 사유

-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사업량 증가[(기존) 8그룹 → (변경) 10그룹]에 따른 예산 증액
- 경기도 확정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18(2025. 1. 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대상자 모집
- 2025.03.~2025.12. :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비예산 사업 추진 ○ 교환일기 실적 : 123건(6개 모임) ○ 모임 실적 : 3회기(21명)
2025	○ 2025년 사업계획 수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000	-	-	8,0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5605
-----	-------	------------	-----	----------	----	------

가족센터 운영(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가족센터(대곶, 구래)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상담·교육, 생활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인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338,510	284,010	54,500	338,510	
국비		169,255	142,005	27,250	169,255	
도비		0			0	
시비		169,255	142,005	27,250	169,2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500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경정(241,370,000원)-기정(186,870,000원) =	54,500	

□ 예산요구 사유

-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교육활동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한 외부기관 (보육시설, 학교 등) 연계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
-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603(2025. 1. 1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기초학습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추진 실적	비고
	2023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 자녀돌봄, 자녀성장,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 지역 사회통합 등 추진 · 참여인원 : 602명(누적 921명), 13개 프로그램(404회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기초소양교육(취업연계 및 상담) : 1회기, 20명 ·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 16회기, 10명(3명 자격 취득, 4명 취업) · 바리스타 양성과정 : 10회기, 10명(10명 자격 취득, 1명 취업) · 기초소양교육(취업정보 및 취업역량강화교육) : 1회기, 20명	9,900천원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 자녀돌봄, 자녀성장,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 지역 사회통합 등 추진 · 참여인원 : 1,950명(누적 2,118명), 16개 프로그램(745회기)	44,900천원
202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신청인원 : 328명(초등 223명, 중등 62명, 고등 43명)	320,840천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과 정 명 : 문화다양성강사 양성,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 사전교육 : 83회기/186시간, 518명 · 직업훈련 : 40회기/120시간, 320명	64,850천원
2025	○ 2025년 사업계획 수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84,010	-	-	284,010	1.17.기준 집행현황

※ 2025년부터 『가족센터 운영 지원(국비)』 사업에서 3개의 사업(다문화 교류소통공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별도의 신규사업(가족센터 운영(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편성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5605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사업규모	1개소 운영		
사업목적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교육, 법률상담, 이주민 공동체 자조 모임 활성화 지원 및 '김포 세계인 큰잔치' 등 내·외국인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제13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42,322	786,834	742,322	44,512	44,51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42,322	786,834	742,322	44,512	44,51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512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434,283,000원) - 기정(431,330,000원) =	2,953	
		- '김포 세계인 큰잔치' 사업비 : 경정(120,000,000원) - 기정(78,441,000원) =	41,559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정주기반 마련과 내·외국인 주민 상호 이해·교류·소통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재원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5.1.7. 고시)'에 따라 확정된 인건비 총액과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 상승 예측치(2.5%) 간 차액 반영 → 2,953천원
- 제18회 김포 세계인 큰잔치 사업비 증액(무대 장치 증설 및 프로그램 확대) → 41,559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2024.8 (자체)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예산지출계획 확정 및 세입·세출예산 공고
 - 2025.02. : 민간위탁금 지급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 2025.10. : 사업수행 실태 조사 등 수탁기관 현장 점검
 - 2025.11.~ 2025.12.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인원수 표기 기준: 실인원

회계연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통역 2,008건, 314명 · 통역 실무자 멘토링 22회, 114명 · 통역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1회, 14명 · 한국전통문화체험 지원(고려인) 1회,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 큰잔치 시민 약5,000명 참여 · 15개 국가별 공동체 자조모임 지원 41회 3,437명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 안정 프로그램 59회 20명 · 센터 직원 역량 강화 소양 교육 1회, 12명 · 질서·범죄예방 / 안전·심폐소생술 교육 11회 5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교실 70회, 22명 · 한국어교육(고려인) 92회, 29명 · 한국어교육 768회, 306명 · 한국문화체험 지원 1회, 205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통역 5,090건, 1,871명 · 통역 실무자 멘토링 12회, 121명 · 통역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1회, 10명 · 다문화 체험마을을 운영 25회, 49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문화체험(고려인 포함) 5회, 200명 · 센터 종사자 소양 교육(법정의무교육) 13회, 26명 · 관내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62회, 53명 · 제17회 김포 세계인 큰잔치(9.29. 시민 약10,00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교실 76회, 27명 · 한국어교육 349회, 446명 · 한국어교육(고려인) 96회, 62명 · 한국어교육 수료식 1회, 116명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3,510	665,379	-	28,131	
2024	742,322	677,854	-	64,468	
2025	742,322	-	-	742,32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임지숙	담당자	행정7급 김완병	전화	5604
-----	-------	------------	-----	----------	----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사업규모	1개소 통·번역사 5명 운용		
사업목적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용 외국인 대상 출·입국 및 고용·노동 등 법률상담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번역사 배치 및 운영 지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43,763	145,000	98,327	46,673	1,237	
국비		0			0	
도비	43,129	43,500	29,498	14,002	371	
시비	100,634	101,500	68,829	32,671	86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673	
외국인 복지센터 통역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경정(140,246,640원) - 기정(96,528,000원)	= 43,718	
		- 운영비 경정(4,753,360원) - 기정(1,797,000원)	= 2,955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상호문화교류센터 운용 통·번역사 인건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4.11.4. 2025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가내시 통보(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3438호)
 - 도비 보조 29,498천원, 시비 68,829천원 부담지시
- '25.1.2. 2025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20호)
 - 도비 보조 43,500천원, 시비 101,500천원 부담지시 확정
- 통역사 채용 및 근무 형태 등 인력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당초) ① 주32시간 × 52주 × 4명
 - 변경) ① 월209시간 × 12월 × 3명, ② 주32시간 × 52주 × 1명, ③ 주8시간 × 52주 × 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7. : 2025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수요조사
 - 2024.11. : 2025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가내시 통보
 - 2024.12. : 2025년도 김포시 본예산 확정
 - 2025.01. : 2025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 2025.01. ~ 12. : 민간위탁금 교부 및 복지센터 통역 인력 운용
 - 2025.12.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회계연도	추진실적			
2022	지원언어	통번역 건수	서비스 지원 실인원	비고
	계	7,073건	3,360명	- 통역원 4명 운영 - 주 40시간 근무
	베트남어	2,477건	1,468명	
	미얀마어	1,755건	880명	
	러시아어	648건	299명	
	태국어	2,193건	713명	
2023	구분	통번역 건수	서비스 지원 실인원	비고
	계	7,816건	4,739명	- 통역원 5명 운영 - 주 40시간 근무
	베트남어	2,177건	1,654명	
	미얀마어	1,848건	1,057명	
	러시아어	665건	223명	
	태국어	1,806건	578명	
캄보디아어	1,320건	1,227명		
2024	구분	통번역 건수	서비스 지원 실인원	비고
	계	6,350건	3,470명	- 통역원 6명 운영
	태국어	2,003건	605명	- 주 40시간 근무
	러시아어	621건	177명	- 주 32시간 근무
	미얀마어	1,309건	1,063명	
	캄보디아어	1,000건	907명	- 주 8시간 근무
	베트남어	911건	571명	
몽골어	506건	14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5,000	167,333	-	7,667	
2024	143,763	136,402		7,360	
2025	98,327	-	-	98,327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임지숙	담당자	행정7급 김완병	전화	5604
-----	-------	------------	-----	----------	----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사업규모	1개소 운영		
사업목적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분소로써, 내·외국인주민 간 문화의 교류와 소통·이해 증진 및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언어발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 배양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③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예절 및 한국어 교육 지원 2.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친교 활동 및 교과지도 지원 3.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연계 5. 이중언어발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주민 간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2.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이해를 위한 언어, 예술, 역사, 문화 교육 지원 3. 내·외국인 주민 간 정서적 이해를 위한 외국인주민 등의 가족 한국초청 및 내국인의 해외 탐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13조
제2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분소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2. 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제13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0,994	174,480	125,827	48,653	103,4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994	174,480	125,827	48,653	103,4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653	
김포시 상호문화교류 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경정(97,305,000원) - 기정(48,652,000원)	48,653	

□ 예산요구 사유

○ 내·외국인 시민 간 문화, 언어 등 교류·소통 증진 사무 수행을 위한 센터 운영 재원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시설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부족 예측치 4~5개월분 증액 → 32,938천원
 ○ 냉난방기 및 방송 설비(스피커, 앰프, 무선 마이크) 등 재산 조성비용 추가 편성 → 15,715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적정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2024.11.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2.~ 2024.06. : 상호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 2024.10. : 상호문화교류센터 개소
- 2025.01.~2025.02 : 예산지출계획 승인 및 세입세출예산 공고
- 2025.02. : 민간위탁금 지급 및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 2025.10. : 사업수행 실태 조사 등 수탁기관 현장 점검
- 2025.11.~ 2025.12.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4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전기, 통신 등) 준공 ○ 개관식 행사 추진(2024. 10. 12.)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118	-	64,118	-	
2024	135,112	130,350	-	4,762	
2025	125,827	-	-	125,827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임지숙	담당자	행정7급 김완병	전화	5604
-----	-------	------------	-----	----------	----	------

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1로 242, 운양역환승센터 A동 1층
사업규모	1개소 운영		
사업목적	반려동물의 기초 검진을 통한 사전 건강관리와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김포시 동물복지 거점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75,772	55,853	55,792	61	-419,91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5,772	55,853	55,792	61	-419,91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1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금	= 61	

□ 예산요구 사유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보조 인력(기간제근로자 1명)이 24.12.31.일자로 고용만료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정산분 반영
※ 진료보조 인력 채용형태 변경 : 기간제근로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

□ 예산증감 사유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보조 인력(기간제근로자 1명)의 고용기간(24.06.17.~24.12.31.)에 대하여 최초 월보수액 신고액 대비 차액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6.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
- 2024.06. ~ 현재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실시설계 용역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리모델링 공사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2024. 6. 24.)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 961마리(개 866, 고양이 95) 진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4.8점(5점 만점)
2025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75,772	428,369	-	47,403	
2025	55,792	2,881	-	52,91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해진	전화	5557
-----	-------	------------	-----	----------	----	------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연 2회, 펫로깅 캠페인 연 2회 등 반려문화 캠페인 수시 추진		
사업목적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도시 구축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4호 및 제7호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050	9,850	6,050	3,800	3,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50	9,850	6,050	3,800	3,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문화 캠페인 등 운영 : 경정(6,850,000원)-기정(4,500,000원)	= 2,350	
	301-14 기타보상금	·반려문화 SNS 이벤트 등 상품 구입 : 경정(3,000,000원)-기정(1,550,000원)	= 1,450	

□ 예산요구 사유

-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로깅’ 캠페인, SNS 이벤트 등 연중 수시로 다채롭고 지속적인 캠페인 및 행사 추진
- 반려인·비반려인의 반려문화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반려문화 통합 리플릿(동물등록, 맹견사육, 펫티켓 안내 등) 제작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참여 유도를 위한 물품 등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반려문화 확산·정착 추진계획 수립
- 2025.03. ~ : 반려문화 SNS 이벤트(수시)
- 2025.04. / 10.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로깅’ 캠페인 추진(연 2회)
- 2025.05. : 반려문화 및 펫티켓 홍보 캠페인 추진(그 외 수시 추진)
- 2025.06. / 11. :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추진(연 2회)
- 2025.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줍깅 캠페인(2024. 5./10.) ○ 반려문화 정책 홍보관(2024. 5./10.) ○ 김포시 반려문화 및 펫티켓 홍보 캠페인(2024. 6.) ○ 반려동물 수기 공모전(2024. 8.) ○ 동물등록 및 펫티켓 캠페인(2024.10./11.) ○ 반려문화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및 펫티켓 현수막 게시(연중 수시)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050	6,039	-	11	
2025	6,050	-	-	6,05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8급 홍소영	전화	5558
-----	-------	------------	-----	----------	----	------

반려문화교육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정규강좌 2기수(기수별 20명, 4회차), 소소모임 1기수(10명, 2회차), 단기특강 5회(10명씩)		
사업목적	반려인의 기본적인 소양 습득 및 올바르게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립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4호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960	19,000	8,960	10,040	10,0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960	19,000	8,960	10,040	10,0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40	
반려문화교육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문화교육 운영 : 경정(19,000,000원)-기정(8,960,000원)	= 10,040	

□ 예산요구 사유

- 반려동물 관련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올바르게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환경 형성 및 반려인·비반려인의 공존과 상생에 필요한 기본 소양 습득 도모
- 보호자와 반려견과의 교감 형성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 동반 특강 운영(신규)

□ 예산증감 사유

-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등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2025년 본예산은 정규강좌 1기수, 특강 2회 운영이 가능한 예산으로 다양한 특강 운영을 위해 추가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연간 반려문화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25. 2. ~ 2025. 6. : 상반기 정규강좌 및 특강 운영
- 2025. 7. : 상반기 운영 결과보고
- 2025. 8. ~ 2025. 11. : 하반기 정규강좌 및 특강 운영
- 2025. 12. : 하반기 운영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1기 : 2024. 3. ~ 4. / 총 20명 / 4회차 완료 ○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2기 : 2024. 5. ~ 6. / 총 20명 / 4회차 완료 ○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3기 : 2024. 8. ~ 9. / 총 20명 / 4회차 완료 ○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4기 : 2024. 10. ~ 11. / 총 20명 / 4회차 완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960	8,960	-	-	
2025	8,960	-	-	8,96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8급 홍소영	전화	5558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77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6,012	17,199	16,962	237	-8,813	
국비	15,607	10,307	10,165	142	-5,300	
도비	7,284	4,828	4,761	67	-2,456	
시비	3,121	2,064	2,036	28	-1,05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7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교육비 : 경정(97,170원*177명*1회)-기정(96,920원*175명*1회) =	237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직무교육비 80,000원/인, 승급교육비 140,000원/인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175명 → 177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보수교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3	총계	
직무교육비		80천원/인	55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98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4	총계		222
	직무교육비	80천원/인	110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112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5	총계		0
	직무교육비	80천원/인	0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0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000	18,120	-	6,880	
2024	26,012	24,480	-	1,532	
2025	16,962	-	-	16,96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개반(독립반), 11개반(통합반)		
사업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긴급보육 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35,632	225,240	319,379	-94,139	-10,392	
국비	117,816	112,620	159,689	-47,069	-5,196	
도비	58,908	56,310	79,845	-23,535	-2,598	
시비	58,908	56,310	79,845	-23,535	-2,59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4,139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등 : 경정(18,770,000원 *12월) - 기정(26,614,000원 *12월)	= -94,139	

□ 예산요구 사유

- 안정적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4개반, 통합반 5개반 운영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0개반 운영
2025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0개반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7,372	194,749	-	2,623	
2024	235,632	188,905	-	46,727	
2025	319,379	-	-	319,379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개소			
사업목적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해당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15,890	299,200	292,800	6,400	83,310	
국비		0			0	
도비	45,578	89,760	87,840	1,920	44,182	
시비	170,312	209,440	204,960	4,480	39,1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40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1,246,700원*20개소*12월)-기정(1,220,000원*20개소*12월) =	6,4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안심보육반 운영 1개반 당 월 400천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반 2개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2개반 → 4개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1개소(19개소 → 20개소)
- 2025. 1. ~ 2025.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490명	19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2024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531명	20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2025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50천원/0명	20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400천원/0개반	4개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900	177,270	-	57,630	
2024	212,890	197,520	-	15,370	
2025	292,800	-	-	292,8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156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추가 지원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해당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309,330	2,547,877	2,269,467	278,410	238,547	
국비		0			0	
도비	2,309,330	2,547,877	2,269,467	278,410	238,547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8,410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급식비: 경정(3,020원*4,156명*203일)-기정(2,690원 *4,156명*203일) =	278,410	

□ 예산요구 사유

- 급식비 지원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
- 급식비 단가 증액에 따른 예산 감액(2,690원 →3,02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 133개소 지원, 월평균 4,163명 지원(3~5세)
2024	-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 125개소 지원, 월평균 3,539명 지원(3~5세)
2025	- 사업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780,000	29,778,950	-	1,050	
2024	2,309,330	2,038,917	-	270,413	
2025	2,269,467	-	-	2,269,467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036명			
사업목적	저출생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폐원 위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영 안정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25,840	484,320	0	484,320	-41,520	
국비		0			0	
도비	525,840	484,320		484,320	-41,52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4,320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2세)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10,000원 * 4,036명 * 12개월	= 484,320	

□ 예산요구 사유

- 저출생으로 인한 폐원 위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원 40인 미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영아 1인당 1만원의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한시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내시 지원 ('24년 한시 지원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25. 1. ~ 2025. 12.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월평균 어린이집 225개소 운영비 지원
2025	- 사업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25,840	435,000	-	90,840	
2025	-	-	-	-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부모급여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677명		
사업목적	육아 비용의 획기적 지원으로 영아기 실질적인 양육 선택권을 보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제2조제1호,제2호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9,895,841	35,123,497	35,181,158	-57,661	-14,772,344	
국비	37,421,881	26,342,623	26,385,868	-43,245	-11,079,258	
도비	8,731,772	6,146,612	6,156,703	-10,091	-2,585,160	
시비	3,742,188	2,634,262	2,638,587	-4,325	-1,107,92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661	
부모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부모급여 : 경정 (625,820원*4,677명*12월)-기정(625,910원 * 4,684명*12월) =	-57,661	

□ 예산요구 사유

- 영아(0~23개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4,684명 → 4,677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부모급여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3	0~11개월	700천원/월	2,819명
	12~23개월	350천원/월	952명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4	0~11개월	1,000천원/월	2,879명
	12~23개월	500천원/월	978명
연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2025	0~11개월	1,000천원/월	-
	12~23개월	500천원/월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780,000	29,778,950	-	1,050	
2024	49,895,841	49,833,541	-	62,300	
2025	35,181,158	-	-	35,181,158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487명		
사업목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832,276	1,771,164	1,731,955	39,209	-61,112	
국비	1,374,207	1,328,373	1,298,966	29,407	-45,834	
도비	320,648	309,954	303,092	6,862	-10,694	
시비	137,421	132,837	129,897	2,940	-4,5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209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가정양육수당 : 경정(100,000원*1,487명*12월)-기정(100,000원*1,443명*12월) =	39,209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1,443명 → 1,487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23	월 평균 지원인원	2,301명	1명	15명
2024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1,370명	0명	13명	1,383명
2025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	-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15,474	3,131,735	-	283,739	
2024	1,832,276	1,778,300	-	53,976	
2025	1,731,955	-	-	1,731,955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456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9,800,722	62,001,508	60,890,498	1,111,010	2,200,786	
국비	44,850,542	46,501,131	45,667,874	833,257	1,650,589	
도비	10,465,126	10,850,264	10,655,837	194,427	385,138	
시비	4,485,054	4,650,113	4,566,787	83,326	165,05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11,010	
영유아보육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육료 : 경정(692,970원*7,456명*12월)-기정(693,000원*7,322명*12월) ≒	1,111,010	

□ 예산요구 사유

-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보육 기회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보육료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7,322명 → 7,456명)
- 국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7,506명/월	599천원	326천원	221천원
연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6,559명/월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연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0명/월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213,926	63,213,926	-	-	
2024	59,800,722	59,800,722	-	-	
2025	60,890,498	2,700,000	-	58,190,498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누리과정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513명		
사업목적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제 23조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437,285	15,294,663	15,678,271	-383,608	-142,622	
국비						
도비	15,437,285	15,294,663	15,678,271	-383,608	-142,622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3,608	
누리과정 운영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육료 : 경정(362,800원*3,513명*12월)-기정(353,600원*3,694명*12월) =	-383,608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3,694명 → 3,513명)
- 도비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누리과정 운영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2023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4,210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약 50천원/인 (3~5세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50명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2024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3,539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약 50천원/인 (3~5세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17명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2025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0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약 50천원/인 (3~5세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719,536	18,719,536	-	-	
2024	15,437,285	15,437,285	-	-	
2025	15,678,271	-	-	15,678,27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해당하는 조, 항 또는 호의 내용을 입력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6,400	72,000	75,600	-3,600	-14,400	
국비	43,200	36,000	37,800	-1,800	-7,200	
도비	21,600	18,000	18,900	-900	-3,600	
시비	21,600	18,000	18,900	-900	-3,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01-01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 경정(600,000원*10개소*12개월) - 기정(700,000원*9개소*12개월) =	-3,600	

□ 예산요구 사유

- 이용 아동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에 따른 시설의 프로그램 지원 예산편성
- 장애, 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아동 비율이 높은 센터들의 정서 프로그램비 지원 및 시간연장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5. 1.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특수목적형 9개소 / 토요일운영 3개소 지원
2024	- 특수목적형 10개소 / 토요일운영 2개소 지원
2025	- 특수목적형 9개소 / 시간연장형 1개소 지원(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8,480	78,480	-	-	
2024	86,400	79,151	-	7,249	
2025	75,600	-	-	75,6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592
-----	-------	------------	-----	------------	----	------

아동수당 지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약 28,186명		
사업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7,813,952	33,695,930	33,917,844	-221,914	-4,118,022	
국비	30,251,163	26,956,744	27,134,275	-177,531	-3,294,419	
도비	3,403,255	3,032,634	3,052,605	-19,971	-370,621	
시비	4,159,534	3,706,552	3,730,964	-24,412	-452,98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1,914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00,000원*28,186명*12월*집행계수99.6%) - 기정(100,000원*28,371명*12월*집행계수99.6%)	= -221,914	

□ 예산요구 사유

-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정기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자 양육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원 금액 : 아동 한 명당 월 100,000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아동수당 변동사항 반영 및 매월 25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만 8세미만 아동 33,255명 지급
2024	- 만 8세미만 아동 31,635명 지급
2025	- 사업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621,813	41,384,000	-	237,813	
2024	37,813,952	36,662,900	-	1,151,052	
2025	33,971,844	-	-	33,971,84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은미	전화	5593
-----	-------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아동 2,569명		
사업목적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초기비용 저축 및 사회진출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618,329	1,563,013	1,585,241	-22,228	-55,316	
국비	1,132,830	1,094,109	1,109,669	-15,560	-38,721	
도비	72,825	70,336	71,336	-1,000	-2,489	
시비	412,674	398,568	404,236	-5,668	-14,10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228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30,251,090원*12월) - 기정(132,103,420원*12월) =	-22,228	

□ 예산요구 사유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 만 18세미만까지 최대 월10만원 한도 1:2매칭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매칭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대상자 가입안내
- 2025. 1. ~ 12. : 매월 초 아동의 적립액에 따라 1:2 정부지원매칭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452명 (보호대상아동: 94명, 가정복귀: 3명, 기초수급가정: 355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4	- 1,106명 (보호대상아동: 98명, 가정복귀: 7명, 기초수급가정: 1,001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5	- 사업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8,432	448,684	-	109,748	
2024	1,618,329	820,966	-	797,363	
2025	1,585,241	-	-	1,585,24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기간	2025. 12.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지오프라자 804-806호)
사업규모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사업목적	피해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가족기능 회복 등 재학대 위험 감소를 위한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위임규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시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826,076	845,606	722,932	122,674	19,530	
국비	413,038	422,803	361,466	61,337	9,765	
도비	206,519	211,401	180,733	30,668	4,882	
시비	206,519	211,402	180,733	30,669	4,88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2,67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 122,674,000*1개소	= 122,674	

□ 예산요구 사유

-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30사례를 선정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생활지원 서비스, 사후점검 및 관리까지 가정별 원스톱으로 심층사례관리 진행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5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5(2025.01.0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03.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운영비 지급
- 2025. 1. ~ 2024.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643,586천원)
202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793,780천원)
2025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분기 운영비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7,109	643,585	-	23,524	
2024	826,076	793,780	-	32,495	
2025	722,932	-	-	722,93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복지7급 김민지	전화	2260
-----	-------	------------	-----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위탁아동 3명		
사업목적	전문위탁가정(만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성지능 아동)대상 가정형 보호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9,000	30,000	36,000	-6,000	-9,000	
국비	27,300	21,000	25,200	-4,200	-6,300	
도비	1,755	1,350	1,620	-270	-405	
시비	9,945	7,650	9,180	-1,530	-2,29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전문아동 보호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전문아동보호비 : 경정 (1,000,000원*3명*10월) - 기정 (1,000,000원*3명*12월)	= -6,000	

□ 예산요구 사유

- 학대피해 아동, 2세이하(36개월 미만),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이 가정위탁 또는 일시위탁으로 보호조치 되었을 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감액

※ 2025년 가정위탁 지원운영(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31(2025.01.03.)>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매월 20일 전문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문가정위탁아동 1명 지원
2024	- 전문가정위탁아동 3명 지원
2025	- 전문가정위탁아동 3명 지원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2,000	-	4,000	
2024	39,000	27,500	-	11,500	
2025	36,000	-	-	36,0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